

2011. 6. 16. (목) 10:00

제 175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제 2 차 본 회 의

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

총 무 위 원 회
[박 노 해]

【 목 차 】

1. 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안-----	1
2.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-----	4
3.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7
4.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-----	10
5.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4
6. 거창군 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----	17
7. 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-----	21
8.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-----	24

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5. 30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5. 30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6. 10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25호

2. 제정이유

- 1977년 제정된 ‘군기’를 현 시대적 정서에 맞도록 변경하여 기존 상징물과 통합 규정함으로써 군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“상징물”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군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,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와 기본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, 안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).
- 상징물의 종류: 군기, 심벌마크, 캐릭터, 군가, 동·식물
 - 동·식물: 군화(개나리), 군목(감나무), 군조(비둘기)
- 다.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거쳐야 할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.

-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민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
라. 상징물의 관리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.
- 상징물은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, 군기·심벌마크 및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‘거창군 이미지 통합 매뉴얼’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
마. 종전 군기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 규정함(안 부칙 제2조, 제3조).
- 군기 변경 및 상징물 통합 규정에 따른 종전 군기조례는 폐지하고,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군기는 이 조례에 따른 새로운 군기를 제작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 조례안은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,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
- 그 주요내용을 보면
 - 안 제1조,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‘상징물’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
 - 안 제3조에서는 군기, 심벌마크, 캐릭터, 군가, 동·식물 등 군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,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와 기본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4조, 제5조에서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군민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과 상징물의 관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

- 이 밖에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·운영토록 하고, 종전 군기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음.
- 이 제정 조례안은 1977년 제정된 '군기'를 현 시대적 정서에 맞도록 변경하여 기존 상징물과 통합 규정함으로써 군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
-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5. 31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5. 31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6. 10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35호

2. 개정이유

- 본청 주민생활지원과의 명칭과 모전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고, '시설관리사업소' 신설에 따른 본청 실·과의 분장사무를 일부 이관하여 신설하는 등 조직 정비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부서의 명칭을 변경함(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2호).
 - 주민생활지원과(장) ⇒ 주민생활지원실(장)
- 나. 실·과장의 사무분장을 조정함(안 제3조제2항제2호라목 및 제8호라목 삭제).
 - 주민생활지원과장
 - 사무이관: 종합사회복지관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 - 문화관광과장

- 사무이관: 스포츠레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, 스포츠시설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.

다. '시설관리사업소' 신설에 따른 설치근거와 위치, 소장의 역할 및 그 소관사무의 대강을 정함(안 제4절(제20조부터 제22조까지) 신설).

- 설치근거: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
- 위 치: 거창읍 양평리 1160번지
- 소관사무: 스포츠레저 활성화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, 스포츠시설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, 종합사회복지관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
라.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함(안 별표).

- 현행: 모전 보건진료소(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726-3번지)
- 변경: 모동 보건진료소(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287-2번지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사업소 설치에 따른 협의 결과가 경상남도로 부터 통보(2011. 5. 31.)되어 '시설관리사업소'가 신설됨에 따라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
- 본청 실·과의 분장사무 일부를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고 시설관리사업소의 설치근거와 위치, 소장의 역할 및 소관사무 등을 정하고 있으며 본청 주민생활지원과의 명칭과 모전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였음.
- 다만,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의하면 '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'라고 규정하고

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되는 소관업무 중 ‘스포츠레저 활성화 등 일반체육업무’가 업무의 성격상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.

-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5. 31.
- 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5. 31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6. 10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36호

2. 개정이유

- 행정기구 신설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고,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(안 별표 2).
 - 5급: 6.2% 이내(현행) ⇒ 6.4% 이내(조정: 증 0.2%)
 - 9급: 8.6% 이상(현행) ⇒ 8.4% 이상(조정: 감 0.2%)
- 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(안 별표 3).
 - 일반직 5급 정원: **증 1명**
 - 현행: 30명(본청11명, 의회3명, 직속기관1명, 사업소3명, 읍1명, 면1명)

- 조정: 31명(본청11명, 의회3명, 직속기관1명, 사업소4명, 읍1명, 면11명)
-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: 감 1명
- 현행: 476명(본청221명, 의회5명, 직속기관63명, 사업소27명, 읍32명, 면128명)
- 조정: 475명(본청214명, 의회5명, 직속기관62명, 사업소34명, 읍32명, 면128명)
- 기능직 정원: 증감없음
- 현행: 76명(본청43명, 의회6명, 직속기관5명, 사업소11명, 읍4명, 면7명)
- 조정: 76명(본청38명, 의회6명, 직속기관6명, 사업소15명, 읍4명, 면7명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사업소 설치에 따른 직급채정 협의 결과가 경상남도로부터 통보(2011. 5 31.)되어 '시설관리사업소'가 신설되고 소장의 직급이 5급으로 책정됨에 따라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
- 그 주요내용을 보면
 - 안 '별표 2'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에서 5급은 증 0.2%, 9급은 감 0.2%로 조정하고
 - 안 '별표 3'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5급 정원은 사업소에 증 1명,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은 감 1명으로 본청 감 7명, 직속기관 감 1명, 사업소 증 7명으로 조정하며, 기능직 정원은 증감이 없고 본청 감 5명, 직속기관 증 1명, 사업소 증 4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○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[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]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5. 30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5. 30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6. 10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26호

2. 제안이유

- 교통, 환경오염 및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
-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과 자전거주차장의 관리·운영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,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).

- 나.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,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, 연도별 활성화계획,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비 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'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' 수립·시행과 그 관련 협의·보고 및 공고·열람 등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(안 제5조, 제6조).
- 다.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과 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,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(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).
- 라. 자전거의 날,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과 군민자전거·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,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보험 가입,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 안전교육의 실시와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장의 설치·운영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 규정함(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).
- 마. 활성화계획의 수립·변경,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연구·개발 및 평가,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 활동 사업의 지원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'거창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'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 규정함(안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).

바.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자전거주차장
· 군민 자전거·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·자전거 수리센터
및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장의 관리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
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6장 보칙으로 규정함(안 제30조)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 조례안은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
- 그 주요내용을 보면
 -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,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
 - 안 제5조, 제6조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,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, 연도별 활성화계획,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비 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‘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’ 수립과 공고·열람 등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과 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,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을 규정하고
 - 안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자전거의 날,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과 군민자전거의 운영,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, 자전거이용자 보험 가입, 자전거타기의 교육, 행·재정적

지원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음.

- 안 제20조에서 제29조까지는 ‘거창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’의 설치, 존속기간, 기능, 구성, 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
- 이밖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자전거 주차장·군민 자전거·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·자전거 수리 센터 및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장의 관리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제6장 보칙에서 규정하고 있음.
- 이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현재 경남에서는 8개 시·군에서 시행하고 있음.
-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〔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5. 30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5. 30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6. 10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27호

2. 개정이유

-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
 -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외국 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고,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 취득 시 일시적인 2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 장애인용 차량 감면대상자의 확대 및 대체 취득차량의 처분기간을 연장하고,
 - 지방세 수납시스템이 전자방식인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 등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징세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(안 제2조제1항).
- 외국인이 국내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감면 대상으로 규정
 -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종전 자동차의 처분기한이 촉박하여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기한연장
- 나.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분 보통고지세목에 한하여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 신청 내용에 따라 일정세액 공제(안 제16조의2 신설).
-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: 고지서 1장당 150원 공제
 - 전자송달 +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: 고지서 1장당 300원 공제
- 다.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(안 제18조).
-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 배제 규정: 제13조제3항 → 제13조제5항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
-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

고,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 취득 시 일시적인 2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 장애인용 차량 감면대상자의 확대 및 대체 취득차량의 처분기간을 연장하였음.

- 안 제16조의2에서는 지방세 수납시스템이 전자방식인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 등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징세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
- 세액공제금액은 세입감소의 최소화 유지를 위하여 법정 최소한의 범위인 행정안전부 전국 통일 권고 금액을 반영하였음.
- 이와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5. 30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5. 30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6. 10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28호

2. 개정이유

- 수질검사 등 각종 검사·시험 업무 이관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불필요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
-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게 통합하여 정비하는 한편
- 제증명발급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과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감면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·보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보건소,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통합한 보건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.

- 현행: 거창군 보건소수가조례 / 거창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
 - 변경: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
- 나.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의 징수기준과 「의료급여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의 적용기준 및 비급여 대상의 진료비 징수기준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).
- 보건기관에서 징수하는 진료비
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
 - 「의료급여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
 - 해당 법령에서 정한 진료비를 적용하되, 이 조례에서 정한 진료비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
 - 비급여대상의 진료비
 -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- 다. 건강진단서 등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(안 제5조 및 별표).
- 라.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진료비의 면제대상에 '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이상인 자'를 추가하며, 진료비를 면제하는 범위를 '본인 부담금'으로 한정하여 규정함(안 제6조).
- 마.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방법과 거짓으로 감면 받은 자에 대한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, 제8조).

바. 보건소,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통합한 조례로 전부개정함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른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와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부칙 제2조·제3조)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‘거창군 보건소수가조례’와 ‘거창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’를 통합하여 정비하고 제증명발급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과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감면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

- 그 주요내용을 보면
 - 현행 조례 제명인 「거창군 보건소수가조례」를 「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」로 조례제명 명칭을 변경하고
 -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의 징수기준과 「의료급여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의 적용기준 및 비급여 대상의 진료비 징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
 - 안 제5조에서는 건강진단서 등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음.
 - 안 제6조에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진료비의 면제대상에 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’를 추가하며, 진료비를 면제하는 범위를 ‘본인부담금’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
 - 이 밖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방법과 거짓으로

감면받은 자에 대한 추징에 관한 사항,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·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.

-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추가 감면함에 따라 수혜대상자가 1만여 명으로 현재보다 연간 30~40% 이용자가 증가할 예상되며 만성질환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노인들에게 경제적부담을 해소하고 아울러 보건기관 이용활성화가 기대되며
-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[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]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5. 30.
- 나. 제출자: 강철우의원의외 2인
- 다. 회부일자: 2011. 5. 30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6. 10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33호

2. 제안이유

-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·보호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1조, 제2조).
- 나. 장애인체육 진흥의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장애인체육 동호회 구성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라.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대상사업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.
- 마. 경비의 지원에 관한 보고·검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바.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위탁사업에 관한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 조례안은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·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
- 그 주요내용을 보면
 - 안 제1조,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
 - 안 제3조, 제4조에서는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군수의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
 - 안 제5조, 제6조에서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범위와 필요시 장애인체육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경비의 지원에 관한 보고·검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 - 이 밖에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·운영토록 하고,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위탁사업에 관한 준용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이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활동의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체육활동을 권장·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
-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[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]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5. 30.
- 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5. 30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6. 10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34호

2. 변경이유

- 2011년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국비(광특) 지원 신규사업으로 시행중인 양항제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사유지 매입

3. 변경된 재산의 표시

- 토지 (단위: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의 표 시			기준가격	취득 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소 유 자	비 고
	구분	소 재 지	면 적					
계		1필지	1,284	35,182				
1	토지	남하면 양항리 1091	1,284	35,182	2011	양항제 생태습지원 조성사업	김진용	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양향제 생태습지원 조성사업 부지 내 사유지 매입안은 거창 생태공원과 생태축을 연결하는 하류 양향제 복원지에 생태 습지원을 조성 지역주민들에게 생태체험·관찰 등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양향제 생태습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내 사유지 1,284m²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.
- 양향제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은 2011년도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 국비(광특) 지원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56,200m²의 부지에 1,150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